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15.1.1 시행)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 시한을 연장함.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축소(안 제3조).
 - 감면을 100% → 75%
- 문화재보호구역 법령 위임 재산세 감면을 추가 50%적용(안 제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8조, 제55조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7조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입법예고문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규제개혁T/F팀, 청렴정책팀과 합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15.1.1. 시행)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부칙 제2조에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 시한을 연장하였고,
-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100%에서 75%로 축소하였고,
- 안 제4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법령 위임 재산세 감면율을 추가 50%적용하여 면제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15.1.1. 시행)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